

# 200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

농림부

## ■ 축산국

제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○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자 확대	○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학생 21만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ML 백색우유공급	○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, 2005년부터 중학생 6만9천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※ 2006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	○ 축산법 제3조, 낙농진흥법 제3조	축산경영과 (500-1909)
○ 자체위생 관리 기준(SSOP)작성·운용 대상 업종 확대	○ 영업자 및 종업원이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 대상 업종 - 도축업,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	○ 자체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 대상 업종 확대 - 집유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	○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(2005. 2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17)
○ 식육판매업소에서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	〈신 설〉	○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·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·원산지·제조일자·유통기한·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,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함	○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(2005. 2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17)
○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	○ 도축장, 축산물가공장에서 HACCP 시행	○ 식육판매업소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 시행	○ 축산물가공처리법 (2005. 1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17)
○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및 자체 검사원·검사 보조원의 수 세분화	○ 자체검사원·검사보조원의 수와 기준 - 자체검사원 : 닭 3만수 이하 도축시 1인 이상, 30,001수 이상 도축시 2인 이상 - 검사보조원 : 소 30두 이하 도축시 1인 이상, 31두 이상 도축시 2인 이상, 돼지 300두 이하 도축시 1인 이상, 3만두 이상 도축시 2인 이상, 닭 3만수 이하 도축시 1인 이상, 30,001수 이상 도축시 2인 이상	○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배치인원을 확대 - 검사관 : 축종별로 근무인원에 따라 도축두수 제한 예) 검사관 1인 소 30두이하, 돼지 300두이하, 닭 2만수 이하 - 자체검사원 : 검사두수를 세분화함 예) 닭 2만수 이하 도축시 1인 이상 - 검사보조원 : 축종별 검사두수를 세분화함 예) 소 61두 이상 도축시 3인 이상 등	○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(2005. 2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17)

제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○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	○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: 53종 ○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: 8종 ○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: 17종	○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 : 25종 ○ 사료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: 12종 ○ 사료내 잔류농약 관리대상 종류 : 12종	○ 사료관리법제13조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(농림부고시) (2005. 5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27)
○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 시행	<신 설>	○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·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	○ 사료관리법제15조제1항(2005. 1. 1)	축산물위생과 (500-1927)
○ 추백리·가금티프스 양성종계군 도태장려금 지급	○ 도태 장려금 지급대상에 가금(질병) 제외	○ “중계장·부화장방역실시요령”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중계 - 중계장의 추백리·가금티프스 검사결과 양성종계군 동거 중계에 대하여 수당 5,000원 도태장려금 지급	○ 중계장·부화장방역실시요령(농림부고시 제 2004-74호, 2004. 12. 6) - 시행일 : 2005. 5월	가축방역과 (500-1943)
○ 가축사육환경 개선시범사업	<신 설>	○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농가가 타지역이전시 친환경축사 시설비, 기반조성비, 기존축사철거비 등 지원 (지원조건 : 축사설치(용자), 기반정비 및 철거비(기금보조 50%, 지방비 30, 자부담 20))	○ 축산법 제3조	축산경영과 (500-1905)

■ 농촌정책국

제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부서
○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 확대	○ 아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·축산·임업·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30% 경감지원 -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·면지역 - 시(市)의 동(洞)지역중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- 특별시·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, 개발제한구역	○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30% 경감 지원	○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시행지침 (2005. 1. 1)	농촌사회과 (500-2081)
○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절차 간소화	○ 제출서류(6종) : 주민등록 등본 등 6종	○ 제출서류(1종) : 신청서 1장만 제출 - 감축되는 서류는 G4C 등 정부전산망으로 확인	○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침 (2005. 1. 1)	농촌사회과 (500-2087)